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공급구역 중복 심사기준(안 제7조제4항)”을 신설

- 1)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 중복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 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 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한 다.</u> <u>⑤ -----</u> <u>-- 제4항-----</u> <u>-----.</u>
<u>④</u>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 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